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6. 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시정,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구현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 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의회사무국 감사일정: 2026. 9. 3.(목)

3. 감사실시 대상

○ 마포구의회 사무국

4. 감사실시 경과

○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의 회 운 영 위원회	[위 원 장] 장영준 [부위원장] 원성혜 [위 원] 강수영, 고안경, 김진천, 남해석, 장정희	마포구의회 사 무 국	의회운영 위원회실	권하나	황인권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 사 방 법	비 고
2026.9.3.(목)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원회실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공무국외출장 운영 내실화 및 관련 기준 준수

○ 의회 시설 · 시스템 개선 및 운영 효율화

○ AI기반 홈페이지 도입 및 디지털 홍보 강화

○ 효율적 조직 · 예산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의회행정팀: 8건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사 결과 여러 의회에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된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계획 수립부터 심사, 출장 실시,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침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공무출장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 협조)

○ 의원수첩의 실제 활용도가 낮은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정리하여,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앞 차량차단기 리모컨의 잦은 오류로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 작동 방식 변경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이 직접 의원 재·부재 시스템의 재실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 협조)

○ 직원별 업무분장과 업무량을 면밀히 점검하여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업무 피로도를 낮추고 조직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2월 간판을 교체한 이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제10대 의회 출범에 따른 재교체가 이루어진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시설물 교체 시에는 의회 임기와 교체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팀 협조)

○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자료 내 목표와 기대효과 등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자료가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국외출장이 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외유성 일정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의원들이 직접 배우고 의정활동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홍보팀: 3건

○ 의회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가 적시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자료별 현행화 주기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AI 시대에 맞춰 의원별 의정활동이나 발언내용을 쉽게 검색·요약할 수 있는 AI 기술을 홈페이지에 적극 도입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 협조)

○ 현재 의회 SNS의 구독자와 팔로워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SNS 홍보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쇼츠,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니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와 협업하여 의회에서도 활용 가능한 홍보방안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책지원1·2팀: 1건

○ 향후 의정활동 안내서에는 조례안 발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초선의원이 주요 의정활동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간략한(1장 분량) 안내자료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리의견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의장(의회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